



구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897호 |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8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2

공 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72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9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80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0

회 람

| 발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 편집: 미디어홍보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68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개정이유

2026. 10. 6.자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청원심의회 위원장 및 내부위원 구성 조문을 개편된 조직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나. 조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제출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감사실
- 주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 전화번호: 032-880-4585 (FAX: 032-880-4859)

4. 붙임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나.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2026 -
----------	--------

제출년월일 : 2026. . .

제출인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개정이유

2026. 10. 6.자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청원심의회 위원장 및 내부
위원 구성 조문을 개편된 조직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나. 조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행정예고: 2026. 10. 15.(목) ~ 2026. 10. 20.(화)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고기
간 단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 중 “자치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생략)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4항의 위원 중 <u>자치안전행정국장</u> 으로 한다.	② ----- ----- -- <u>자치행정국장</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내부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u>자치안전행정국장</u> , 감사실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 <u>자치행정국장</u> ----- -----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 <u>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 」에 따라 각종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 ----- ----- 「 <u>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작성자: 代 감사실 감사팀장 서선애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감사실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 토 내 용	유	무
검토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2026. 10. 31.
3. 공고대상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과태료 금액
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번길 ○	교육 미이수	폐문부재	250,000원

4. 공고내용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를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에는 매월 1.2% 최대 60개월까지 증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미추홀구(건설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다.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032-880-4406)

2026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80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상해요인)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상해요인)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납부예정금액	반송사유	비 고
송*식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 *층(은행동)	7,450원	수취인불명	
전*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9번길 **, ***호(송의동)	1,587,610원	폐문부재	
성*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 1**동 ****호(서초동)	9,083,220원	수취인불명	
이*규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 1**동 ****동(정왕동)	8,800원	폐문부재	
이*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주길 **, *동 ***호(주안동)	35,570원	폐문부재	
우*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주안동)	60,990원	폐문부재	
김*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동****호(학익동)	25,385,870원	폐문부재	
이*환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93번길 **-, *동 ***호(가정동)	865,760원	폐문부재	

6. 공시송달내용

가. 위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를 통보하오니 2026. 10. 28.(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 대상자는 아래의 계좌로 2026. 10. 28.(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요건등)에 따라 재산압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7. 납부방법 : 계좌입금 신한 1*0-022-717568(예금주 인천시미추홀구청)

8. 문의사항 :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담당자(☎032-880-4274)